

2026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추진계획

2026. 4.



교육부
[운영지원과]

I 포상 개요

◆ 교육발전 풍토 조성을 위해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교육 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선발·포상하여 그 공을 치하

□ 연 혁

- 국민교육헌장 선포를 기념, 교직원 등 대상으로 포상 시작('69.~)
- 스승의 날 포상과 분리하여 교원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립학교 및 산하단체 임직원 중심으로 포상('99.~)
- *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국민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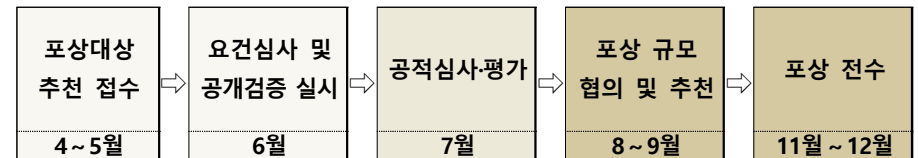
□ 선발 대상

- ① 교육 전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 ② 교육 분야에 재산·재능을 기부·후원한 자
- ③ 교육 분야 국정과제 등을 성실히 추진한 공무원

□ 훈 격

- (정부포상)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 (등급)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
- (장관표창) 교육부장관표창

□ 포상 절차



※ 추진 일정은 포상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II 세부 선발 계획(안)

◆ 포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포상은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공무원은 장관표창 수여를 원칙으로 함

□ 추천 대상

- ① 교육 전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 학교법인 임직원 및 각급 사립학교 직원
 - 교육부 산하단체 및 교육 관련 공익법인·단체 임직원
 - 기타 국민교육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② 교육 분야에 재산·재능을 기부·후원한 자
 -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거나, 지속적인 재능 기부, 학생 선도, 후원 등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 ③ 교육 분야 국정과제 등을 성실히 추진한 공무원(장관표창)
 - ※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표창을 별도 실시하는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국민 직접 추천'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만 포상 검토

□ 포상 규모(안) ※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정부포상) 비공무원(개인) 대상 40점 내외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합 계
5	5	15	15	40

※ (최근 3년간 포상 규모) '23년 36점 / '24년 36점 / '25년 34점

- (장관표창) 비공무원(단체 포함) 및 공무원 대상 150점 내외

비공무원(단체 포함)	공무원	합 계
120	30	150

※ (최근 3년간 표창 규모) '23년 143점 / '24년 135점 / '25년 128점

□ 포상 기준

※ 추천 기준일 : '26. 5. 31.

- (수공기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규정된 기간 이상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

훈 격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공무원	비공무원
수공기간	15년	10년	5년	3년	2년

※ 이미 포상을 받은 자가 동일 종류의 상위 훈격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추가공적 필요(훈장 7년, 포장 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3년, 장관표창 2년)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장관표창을 이미 받은 자는 기 수여된 포상의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장관표창 수여 금지

추천훈격	제한기간	추천 제한
훈 장	7년	'19. 6. 1.을 포함해 그 후에 정부포상을 받은 자
포 장	5년	'21. 6. 1.을 포함해 그 후에 정부포상을 받은 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	3년	'23. 6. 1.을 포함해 그 후에 정부포상을 받은 자
장관표창	2년	'24. 6. 1.을 포함해 그 후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받은 자

- (결격사유)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규정된 추천제한 사유(붙임3, 4)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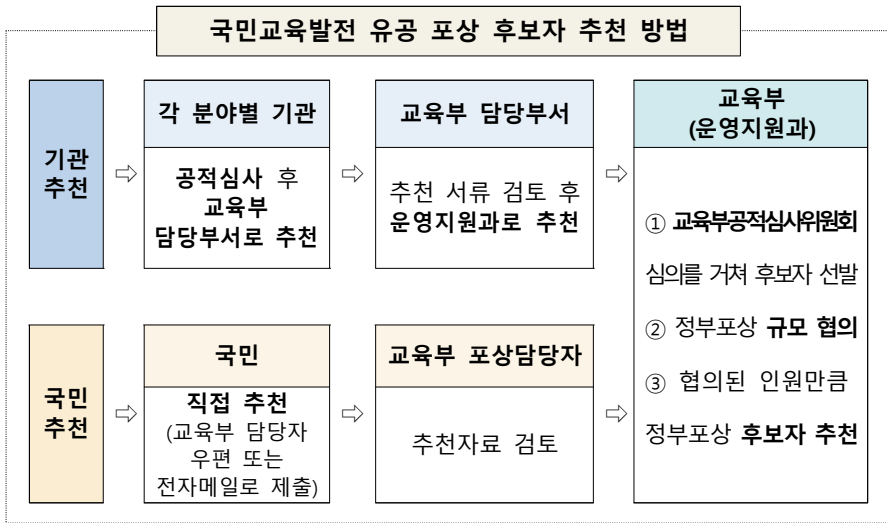
□ 후보자 추천 방법

- (기관추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내용, 수공 기간, 기서훈,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 훈격을 정하여 후보자 선정 후 교육부 담당부서로 관련 서류 제출

※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은 각 기관 추천자 접수 이후, 교육부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실시

- (국민추천) 일반 국민의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부 담당자 앞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wkdrms0309@korea.kr)으로 직접 서류 제출

※ 단, 국민추천자가 기관 추천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자료를 송부하여 기관 추천될 수 있도록 안내



□ **기관별 추천 인원 및 유의사항**

○ **기관별 추천 인원**

- (정부포상) 공적 내용 및 수공 기간을 고려하여 추천(별도 인원배정 없음)
- (장관표창) 시도 교육청은 추천 가능 인원을 **별도 배정**(붙임1) 하고, 그 외 기관은 정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인원만큼 추천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수(기관별 일반직 총 정원 기준)	
· 정원 300명 미만: 1명 이하	· 500명 이상 ~ 700명 미만: 3명 이하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2명 이하	· 700명 이상: 4명 이하

○ **추천기관 유의 사항**

- 일선 현장의 하위직급 직원, 각종 학교 소속 직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 분야의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 감사원 또는 교육부의 감사·조사개시 통보가 있는 경우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 요건(붙임3, 4)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천 제한자는 추천 제외

III 추천 관련 행정사항

□ **추천 절차 및 기한**

※ 각 기한 이후 접수될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 (기관추천) 각 기관은 '26.5.22.(금)까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기관)로 대상자 추천

< 추천 부서(기관) 예시 >

분야별 제출기관	추천 부서(기관)
유·초·중등 교육 관련 일반인, 지방공무원	시·도 교육청
사립대학교(학교법인 포함)	사립대학지원과(일반대) 전문대학지원과(전문대)
국립대 및 국립대법인	국립대학지원과
교육대학	교원양성연수과
국립대학병원	의대혁신지원과
국립특수학교	특수교육정책과
재외공관 및 관련기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기타(유관기관 등)	교육부 소관(담당) 부서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및 타 부처 소속 공무원	운영지원과

※ 추천 부서(기관)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35)로 연락

- 해당 부서(기관)는 각 제출기관의 추천 내용을 검토(거짓 공적 여부 등) 하여 '26.5.29.(금)까지' 교육부 운영지원과로 공문 제출(추천 서류 포함)

※ 대용량 파일은 포상담당자 전자우편(wkdrns0309@korea.kr)으로 별도 제출

- (국민추천) '26.5.29.(금)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wkdrns0309@korea.kr)으로 추천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및 서식: 붙임2 참고**

IV 향후 일정

- '26. 4월 ~ 7월 추천 접수, 요건심사 및 공적 사실 확인, 평가 진행
- '26. 8월 ~ 9월 정부포상 규모 협의 및 대상자 추천(행정안전부)
- '26. 11월 ~ 12월 포상 대상 확정·수여

붙임 1 시·도 교육청별 장관표창 추천 가능 인원 수

구 분	비공무원	공무원	합 계
서울	9	2	11
부산	7	1	8
대구	5	1	6
인천	7	1	8
광주	3	1	4
대전	3	1	4
울산	3	1	4
세종	1	1	2
경기	9	3	12
강원	3	1	4
충북	3	1	4
충남	5	1	6
전북	3	1	4
전남	3	1	4
경북	5	1	6
경남	7	1	8
제주	1	1	2
합 계	77	20	97

붙임 2 제출서류 목록

추천	연번	제출 대상자		서류명	서식	
		훈격	신분			
기관 추천	1	공통	전원	포상 후보자 추천 명부	(엑셀)서식①	
	2	공통	비공무원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엑셀)서식②	
	3	공통	전원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	
	4	공통	전원	자체 공적심사 세부기준	-	
	5	공통	전원	공적조서	(한글)서식②	
	6	공통	전원	공적요약서	(한글)서식③	
	7	공통	공무원, 사립 임직원	인사기록요약서	(한글)서식④	
	8	공통	전원	현지 확인서	(한글)서식⑤	
	9	공통	전원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한글)서식⑥	
	10	국무총리 표창 이상	전원	포상 후보자 주요 공적내용	(한글)서식⑦	
	11	국무총리 표창 이상	전원	추천훈격 및 하위훈격 추천 동의여부 확인서	(한글)서식⑧	
	12	훈장	법인·단체 임직원 등 그 외	포상 대상자 신원증빙자료	인사기록카드 사본(A4규격) 이력서	- (한글)서식⑨
	13	훈장	전원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한글)서식⑩	
국민 추천	1	공통	전원	포상 후보자 추천서	(한글)서식①	
	2	공통	전원	현지 확인서	(한글)서식⑤	
	3	공통	전원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한글)서식⑥	
	4	공통	전원	추천훈격 및 하위훈격 추천 동의여부 확인서	(한글)서식⑧	

※ 포상 후보자 추천 명부(엑셀서식①)와 공적조서·요약서(한글서식②,③)의 추천기관명·직위·직급·경력·공적내용 등 내용은 모두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서류 작성 시,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람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주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2000.01.01. ~ 2009.12.31.) · 전 (2010.01.01. ~ 2019.12.31.) · 현 (2020.01.01. ~ 현재) · 현 (2024.01.01. ~ 현재) 		
공적내용*	<p>○ 글씨 서식(돋움, 10pt), 줄간격 180% 이하, 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 2,500자 미만 작성 시 시스템 입력이 되지 않아 포상 추진 불가</p> <p>○ 피추천자 공적은 '공적내용'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심사 예정 - 사진 등 기타 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란에 함께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사진 및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 자료를 별도의 서식으로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추천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주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공적 사실에 대한 확인요청 시 제출 필요
- ⑤ **본인 및 단체 자체 추천은 불가**

《추천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주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훈격, 공적내용 등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 서류, 언론보도 등)를 제출해 주시면 공적 조사에 도움이 되며, 추후 공적 사실 확인 요청이 있을 때 추가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 ⑤ **본인 및 단체 자체 추천은 불가능**합니다.

< 보내실 곳 >

- 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512호 교육부 운영지원과
- 전자메일 : wkdrns0309@korea.kr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문의전화 : ☎044-203-6135
- **추천기한 경과 후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서식 2 >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개인용)

(앞쪽)

성 명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추천 훈격(勳格)	추 천 순 위	훈격 및 분야별 순위 기재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년 ○○월 기재	
공적 요지(70자 이내) ○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이 사람은, 대상자는, 위는, 상기인은, 000은,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등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 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p> </div>			
조사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2000.01.01.~2019.12.31.	
2020.01.01.~2020.12.31.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2000.12.31.	
2010.06.30.	
공적 내용	
<p>○ 글씨 서식(돋움, 10pt), 줄간격 180% 이하, 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 2,500자 미만 작성 시 시스템 입력이 되지 않아 포상 추진 불가</p> <p>○ 피추천자 공적은 '공적내용'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여야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심사 예정 - 사진 등 기타 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란에 함께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사진 및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 자료를 별도의 서식으로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p>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 체 명			
주 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대 표 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휴대폰) (이메일)	
추천 훈격(勳格)	추 천 순 위	훈격 및 분야별 순위 기재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〇〇년 〇〇월 기재	
<p>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p> <p>※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이 사람은, 대상자는, 위는, 상기인은, 000은,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등</p>			
조사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뒤 쪽)

단체 연력	
연 월 일	이력사항
2000.01.01.~2019.12.31.	
2020.01.01.~2020.12.31.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2.31.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010.06.30.	
공적 내용	
<p>○ 글씨 서식(돋움, 10pt), 줄간격 180% 이하, 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 2,500자 미만 작성 시 시스템 입력이 되지 않아 포상 추진 불가</p> <p>○ 피추천자 공적은 '공적내용'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여야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심사 예정 - 사진 등 기타 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 내용'란에 함께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사진 및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 자료를 별도의 서식으로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p>	

공적요약서(개인 표창)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만 세)	
	(한자)				
재직기간			가족사항		
주요근무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과거포상 (총리표창, 모범이상)	훈 격	수여일자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공적요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250~3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핵심 공적사항은 수상자의 공적을 언론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가능한 6하 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작성자(인사담당자)			확인자(인사담당관)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공적요약서(기관 표창)

소 속		기 관 명	
기 관 장 직 급		기 관 장 성 명	
기 구 성 개 요	※ 기관내의 단위조직과 구성원의 직급·인원수 기재		
공적요지			
(공적요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250~3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핵심 공적사항은 수상자의 공적을 언론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가능한 6하 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소 속		직 책	

2. 주요 공적내용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 지역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포함)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 해당 여부
 ○ 추천제한(사회적 물의 등 유발)에 대한 부적격 여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책(직급) : 성명 : (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 개인용)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 개인용)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교육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일반인만 해당)
- 정부포상 또는 교육부장관표창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인 포상건에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

2. 공적심사 등 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장관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교육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심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재교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임,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기록부 : 영구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외국인등록번호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제2호,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부 귀중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기관용)

□ 포상 후보기관

기관명	
주소	

위 기관은 교육부장관 표창 후보기관으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기관은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정부포상 또는 교육부장관표창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인 포상건에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

2. 공적심사 등 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기관명 (직인)

< 서식 7 >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후보자 주요 공적내용

연번	소속 ①	직위 (직급) ②	성명 (한자) ③	연령 ④	총경력 ⑤	기서훈 ⑥	주요 공적내용⑦	추천훈격 ⑧	비고
1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	66세	35년 6월	국민 훈장 목련장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공적 위주로 작성 - 반드시 '~에 기여함'으로 종결 - '투철한 사명감' 등의 용어 사용 금지 <p style="color: blue; font-size: small;"><공적요지 작성 예시(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 까지 00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 하여 000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0억원) 하고, 공기를 단축 (0년0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p>	국민훈장 모란장	

※ 작성요령

- ① 소 속 :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 ② 직 위 : 이사장, ○○학교 운영위원장
- ③ 성 명 : 홍길동, 추서인 경우 (고) 홍길동
- ④ 연 령 : ○○세(2026.5.31. 현재)
- ⑤ 총경력 : ○년○월(2026.5.31. 현재)
- ⑥ 기서훈 : '국민훈장 목련장'(83), '대통령표창'(99) 등 국무총리표창 이상 기재
- ⑦ 주요 공적내용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개인별로 1쪽이내** 작성하되, 대상자의 주요공적내용 중 **연도, 금액 등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 ⑧ 추천훈격 : 국민훈장 00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기재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수령·검토,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붙임 3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정부포상 업무지침)

일반인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입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5.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외국인

1.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자 또는 단체(기관)
2.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단체(기관)

단체

※ 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만 수여(훈·포장 제외)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4

장관표창 추천제한 요건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공 통

1. 재표창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다만, 장관상, 퇴직자 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3.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5.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 또는 단체(기관)(국무총리표창 이상)

공무원

※ 공무원직원,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포함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가.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3.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포상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
나. 주요비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4.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다만,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경고 추천제한 적용을 제외함

일반인

1. 형사처벌을 받은 자

- ①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
- ②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4.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단 체

1.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